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112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9.04

yulgwangeasy@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2

열광회관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쿡일레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쿡일레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5, 3층(가락동, 다운빌딩)

전화 : 1599-3381

팩스 : 02-6242-338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99-338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쿡일레븐	열광회관 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5, 3층(가락동, 다운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7.16	2014.07.21	손재성	1599-3381	02-6242-3381
	법인등록번호	120111-0717762	사업자등록번호	131-86-6287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대표자)	손재성	열광회관 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5, 3층(가락동, 다운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손재성	1599-3381	02-6242-338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집밥뚝딱 외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손재성	1599-3381	02-6242-3381
	법인등록번호		110111-6572162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오름에프씨	무공돈까스 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6, 3층 일부(가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곽환기	1600-9046	02-6232-9091
	법인등록번호		110111-6990877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명륜당	명륜진사갈비 외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6, 2층(가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도선애	1566-3607	02-508-1888
	법인등록번호		110111-4882373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너스	피자쿠치나 외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길 5-18, 1층(가락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동엽	1599-3385	-
	법인등록번호		110111-5514991	사업자등록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맛있는수다	열광회관	2022.1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엄승현
		소우정	2023.09.01		손재성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열광회관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열광회관	
상 호	열광회관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I.9. 참조)	열광	등록번호 : 4102252180000
		해당 로고는 영업표지로 사용하나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1,611	67,139	-5,528	28,747	-37,144	-37,010
2022	35,812	104,936	-69,124	0	-15,676	-63,595
2023	104,391	134,964	-30,572	302,262	38,502	38,551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손재성	사내이사 (대표자)	2024.05.21~현재	(주)쿨일레븐 사내이사	업무총괄
			2021.07.13~현재	주식회사 맛있는수다 사내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쿨일레븐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마장돈백갈비(등록번호:2021119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1.06.18.~현재	집밥똑딱(등록번호:2021119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맛있는커피(등록번호:2021292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맛있는스시(등록번호:2021291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맛있는스테이크(등록번호:2021290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맛있는호프(등록번호:2021291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맛있는분식(등록번호:20212913)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베이커리(등록번호:20212921)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마라탕(등록번호:20212920)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쥬스(등록번호:20212917)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피자(등록번호:2021291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빙수(등록번호:2021291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치킨(등록번호:2021291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햄버거(등록번호:20212918)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다락방(등록번호:20212911)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가맹사업 경영	*2023년 8월 자진등록취소	맛있는반점(등록번호:2021291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름에프씨	가맹사업 경영	2019.10~현재	무공돈까스(등록번호:20200193)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름에프씨	가맹사업 경영	예정	무공닭갈비(등록번호:20212891)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름에프씨	가맹사업 경영	예정	조선닭꼬치(등록번호:20212888)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2017.07~현재	명륜진사갈비(등록번호:20171254)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햄버거(등록번호:2021246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아이스크림(등록번호:20212461)이라 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커피(등록번호:2021244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스테이크(등록번호:2021246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스시(등록번호:2021245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개수리 민물장어 막국수(등록번호:20212108)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정육식당(등록번호:2021025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2021.06~현재	개수리막국수(등록번호:20210098)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분식(등록번호:2021244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호프(등록번호:20212443)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당제과(등록번호:2021245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쥬스(등록번호:2021245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피자(등록번호:2021245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명륜하노이(등록번호:20212451)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2021.05~현재	청담물갈비(등록번호:20211104)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신당분식(등록번호:2021092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팔팔인생해장(등록번호:2021009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가맹사업 경영	예정	이유치킨(등록번호:2021009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2023.07~현재	샤브올데이(등록번호: 20230261)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2020.06~현재	피자쿠치나(등록번호: 20201021)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2020.06~현재	양호실떡볶이(등록번호: 20211458)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퀵비(등록번호: 20212712)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맛담(등록번호: 2021271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 너스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쿠시혼(등록번호: 20212715)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열광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2.01.25 등록	등록 4102252180000	(주)맛있는수다	2032.01.25. (2032.01.25.)

-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인 (주)맛있는수다로부터 상표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열광회관 가맹사업 현황

1. 열광회관을 시작한 날 : 2020년 6월 11일

2. 열광회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맛있는수다	곱품닭	박현정	2020.06.11.~2021.07.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주식회사 맛있는수다	곱품닭	손재성	2021.07.13.~2022.06.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주식회사 맛있는수다	곱품닭	엄승현	2022.06.24.~2022.0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주식회사 맛있는수다	열광집	엄승현	2022.07.20.~2022.10.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4층(가락동)
(주)쿨일레븐	열광회관	박현정	2022.10.19.~2024.05.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5, 3층(가락동, 다운빌딩)
(주)쿨일레븐	열광회관	손재성	2024.05.21~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5, 3층(가락동, 다운빌딩)

3. 열광회관 업종

영업표지	업종	
열광회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보쌈, 낙지볶음, 쟁반막국수, 김치찌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열광회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2	2		3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1	
울산							1	1	
세종									
경기	4	4		2	2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당사는 2022년 10월 (주)맛있는수다로부터 열광회관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2021, 2022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이전 가맹본부에서의 운영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열광회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3		2		4
2022	4	-		2		2
2023	2	3		2		3

○ 당사는 2022년 10월 (주)맛있는수다로부터 열광회관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2021, 2022년 가맹점 수는 이전 가맹본부에서의 운영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6. 열광회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열광회관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국일레븐	마장돈백갈비	20211196	한식	0/0	0/0	0/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맛있는수다	집밥뚝딱	20211197	한식	158/0	164/0	93/0
		맛있는커피	20212922	커피	-	-	-
		맛있는스시	20212919	일식	-	-	-
		맛있는스테이크	20212909	서양식	-	-	-
		맛있는호프	20212910	주점	-	-	-
		맛있는분식	20212913	분식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	명륜진사갈비	20171254	외식	507/0	463/1	560/1
		명륜햄버거	20212462	패스트푸드	-	-	-
		명륜아이스크림	20212461	아이스크림/빙수	-	-	-
		명륜커피	20212442	커피	-	-	-
		명륜스테이크	20212460	서양식	-	-	-
		명륜스시	20212459	일식	-	-	-
		명륜반점	20212458	중식	-	-	-
		개수리 민물장어 막국수	20212108	한식	-	-	-
		명륜정육식당	20210254	한식	2/0	0/0	0/0
		개수리막국수	20210098	한식	3/1	5/1	9/1
		명륜분식	20212449	분식	-	-	-
		명륜호프	20212443	주점	-	-	-
		명륜당제과	20212456	제과제빵	-	-	-
		명륜쥬스	20212455	음료 (커피 외)	-	-	-
		명륜피자	20212452	피자	-	-	-

		명륜하노이	20212451	기타 외국식	-	-	-
		청담물갈비	20211104	한식	5/0	12/0	12/0
		신당분식	20210927	분식	-	-	-
		팔팔인생해장	20210099	한식	-	-	-
		이유치킨	20210097	치킨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오름에프씨	무공돈까스	20200193	외식	57/0	75/0	60/0
		무공닭갈비	20212891	한식	-	-	-
		조선닭꼬치	20212888	주점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명륜당파트너스	샤브올데이	20230261	한식	-	-	7/0
		양호실떡볶이	20211458	분식	31/0	29/0	18/0
		피자쿠치나	20201021	피자	32/0	30/0	17/0
		퀵비	20212712	주점	-	-	-
		맛담	20212714	한식	-	-	-
		쿠시혼	20212715	일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열광회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열광회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3개	51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열광회관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5,324	45,324		
광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본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빌딩	02-1588-1111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쿡일레븐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쿡일레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열광회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비, 교육비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 가입비(가맹비의 10%)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가맹비의 90%)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오픈지원비	3,300	계약 체결일	- 가맹점 개점준비 및 개점 후 매장운영지원 - 개점 전 2일을 포함하여 5일간 가맹점 개점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당사 직원 2인 인건비

○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가능합니다.

○ 교육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초과하는 1명당 일금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 포함>의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2,200
오픈지원비	3,300

○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1,060				66㎡(20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36,300	1,815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사인물	협력업체	7,700				라이트패널, 네온파사드 별도
주방기기/집기	가맹본부	20,900	1,045			
의탁자	가맹본부	4,400	220			
오픈초도물품	가맹본부	1,760	88			테이블메뉴판 유니폼 앞치마 명함 전단지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간판/사인물, 주방기기/집기, 의탁자 등 모든 항목은 열광회관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1) 가)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설계,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기획관리비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6㎡ 미만은 평당 단가가 아닌 1식 공사 기준으로 66㎡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내/외장공사 기획관리비 : 3.3㎡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
2. 간판 기획관리비 : 가맹본부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부가세포함>

○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익스테리어, 데크공사,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어닝, 외부닥트, 식자재 초도물품, POS, 외부공사, 간판(내부사인물 포함, 외부POP, 현수막), 인터넷, 전화, 음향(앰프/스피커), CCTV, 온수기, 인허가비용, 석면공사, LED라이트패널, 그 외 점주 요청 공사 등 과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방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항목별(인테리어, 주방기기 및 기물, 포스 등)로 별도 책정되어 발생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열광회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구체적인 물품 내역은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의 1.98%	익월 10일	-	사용된 비용	CMS자동이체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광고 실시 전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V.9. 광고 및 판 촉활동 참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약 후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해인금전 지급의무의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에는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한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열광회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비 중 가입비(가맹비의 10%)를 제외한 금액, 교육비, 오픈지원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금액(IV.1.1. 표)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열광회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별지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열광회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023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열광회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023년 기준

2) 당사가 열광회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광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1599-3381)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홈페이지 또는 공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보쌈과 낙지볶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열광회관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가맹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 특수상권이라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열광회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열광회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100	0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열광회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3항
○ 열광회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4조 3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6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7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2조 물품의 하자과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3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3조 영업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5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 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

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1599-3381)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중 가입비(가맹비의 10%)를 제외한 금액, 교육비, 오픈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금액(IV.1.1). 표)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속 승인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상기 양수인의 지급비용과 동일한 비용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귀하가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6개월 동안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열광회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보쌈과 닭지볶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1599-338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열광회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3:00	연중무휴	문의: 당사(1599-338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비고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등의 운영 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 또는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열광회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20%	80%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금 산정 → 부담금 통지 → 부담금 지급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진행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금 산정 → 부담금 통지 → 부담금 지급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진행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할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열광회관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한 영업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에 산입하고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가맹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한다.
 1. 잔여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6(개월)
 2.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5(개월)
 3.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4(개월)
 4.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3(개월)
- ④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에서 정한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1회 적발시마다 위약금 일금이천만원(₩20,000,000)
 2.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오천만원(₩50,000,000)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회 적발시마다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
 4.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광고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⑧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4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54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53~51(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5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50~5(4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2(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1599-338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열광회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열광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 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열광회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추후 통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신규 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교육비는 2인 기준이며, 1인 추가 시 일금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열광회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99-338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원·부재료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물품명, 규격, 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서 공급하는 물품(원·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물품 외에도 당사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당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당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방기기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방집기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메뉴 및 판매가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2023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공급하는 품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